

『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대상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영세한 주택의 밀집으로 통풍, 일조 등 자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
-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 과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

주택 구조상의 문제로 화재 및 재해위험이 증대되고 있음

- 따라서 주택 철거에 대한 도시영세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
현지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
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개설을
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함

다. 주요내용

- 정비사업의 명칭 : 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- 정비구역 및 면적

지정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신 설	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	구미시 고아읍 이레리 339번지 일원	46,066	

-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태	주요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51	20	보조 간선	2,994	대1-14 오로451-6	대3-40 관심691-5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기정	중로	2	83	15	집산 도로	195	중1-51 이례산3-1	중2-82 이례325-5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기정	소로	2	28	8	국지 도로	200	중1-51 이례리442	중1-53 이례리313-6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 5)	
기정	소로	2	29	8	국지 도로	165	중1-53 이례489-4	중2-83 이례355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기정	소로	2	30	8	국지 도로	205	중1-53 이례리427	중2-83 이례리342	일반 도로	-	경북고시 ³ (94.1.5)	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및 결정조서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 설		노외 주차장	고아읍 이례리 387번지 외 1필	723		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 및 결정조서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 설		공 원	소공원	고아읍 이례리 442번지	196		

라. 참고사항

-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의견제시의 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영세한 주택의 밀집으로 통풍, 일조 등 자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계획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한 이례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
- 주택개량과 계획된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,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의 건 서

□ 사 업 개 요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이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2.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이레리 339번지 일원
3. 정비구역 면적 : 46,066m²
4.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
 - 용도지역 : 제1종일반주거지역
 - 계획세대수 : 108세대(280명)

□ 주 요 내 용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·사업 추진 시 현지 개량 방식으로 구미시장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므로 정비기반 설치는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개선사업 후 주택의 개량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개별 시행하는 방식임

○ 따라서 정비기반시설(도로, 공원, 주차장) 설치 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므로,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, 토지이용도를 극대화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